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전라)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날짜: 2022년 10월 26일(수요일)

시간: 13:00 - 15:00

장소: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 일 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13시 00분 - 15시 00분
- 장 소 :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 홀

- 세부 프로그램

시간	강연 내용	발제자	사회자
13:00-13:05	등록 및 소개		황정현 (원광대학교)
13:05-13:30	<강연 1> 한국형 Title-IX, 정말 필요한가?	김현수 前)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13:30-13:55	<강연 2>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소프트볼	김지영 강사 동아대학교	
13:55-14:05	중간 휴식		
14:05-14:30	<강연 3>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 학교체육 현장의 사례	김세환 교사 전남 순천금당중학교	
14:30-14:50	청중 참여 토론 및 질의응답	참가자 전원	
14:50-15:00	폐회 및 종합		

목 차

강연 1. 한국형 Title-IX, 정말 필요한가?	1
------------------------------------	---

김현수 [前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강연 2.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소프트볼	20
---	----

김지영 [동아대학교 강사]

강연 3.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 학교체육 현장의 사례	25
---	----

김세환 [전남 순천금당중학교 교사]

<강연 1>

한국형 Title-IX, 정말 필요한가?

前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김 현 수

I. 서론

“어떠한 교육활동이나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활동들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될 수 없으며, 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Title-IX」

한국 사회의 스포츠 혹은 체육 교육 현장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를 논할 때마다 회자되었던 것이 Title-IX이다. 1972년 6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학교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이 법은 영어단어 37개로 구성된 짧은 법이지만 여학생 체육에 획기적 변혁을 불러왔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교육적 노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들, 예를 들어 운동경기, 학교체육수업, 스포츠클럽, 레크리에이션, 교내대항경기는 모두 Title-IX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조미혜 등 역, 2015: 3).”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1978년 이 법안이 의무화되면서 남자팀이 있는 학교는 여자팀을 만들어야 했고, 남자 선수 10명을 선발하면, 여학생 선수도 10명을 선발하고, 종목 선정, 장비 및 지원품, 경기 및 훈련시간 배정, 코칭 기회, 라커룸 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남녀는 동일한 대우¹⁾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남학생의 1/10에도 못 미친 294,015명에 불

1) 전영지 2015. 6. 3. 스포츠조선. [여학생체육]美여자축구 최강 이끈 '타이틀9'의 힘, '한국형 타이틀9'은?

과하던 여고생 스포츠 참여 인구가 2010~2011년 여고생 기준 3,173,549명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무려 1,079%성장한 것이다. 이제 남학생들과의 격차도 거의 없고, 현재 미국 여자스포츠의 저력은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146개국 11-17세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여학생이 97.2%로 조사대상 나라 중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다. 유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부진은 평생스포츠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 연령대의 신체활동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운동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²⁾.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평등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도 여자축구, 여자씨름, 여자농구, 여자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되고, 국제무대에서 여성 선수들의 선전으로 뚜렷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으며, 여자 골프, 테니스 등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여성 스포츠 저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무려 45년 전 미국에서의 변화와 같이 근본적인 차별철폐로 인한 변화는 아직 마주한 바 없고, 여성 스포츠의 지위 또한 그 성과에 비해 시원찮은 편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Title-IX」과 같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만병통치약과 같이 여겨지는 입법 조치가 과연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를 진단하고, 학교체육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여성의 지위 제고와 역할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Ⅱ. 여성의 지위가 머무르고 있는 곳

1. 국제적 기준들

□ 주요 원칙

○ 관련 법령 등

(국제적 기준)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6040100035340002168&ServiceDate=20150603>

2) 2019. 11. 22. 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운동부족 세계 최악...여학생은 146국 중 '꼴찌'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59700009>

(정부 가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등

○ 주요 범주

-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
- 평등권 원칙을 제시하며, 여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인
- 평등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 모색
- 국가의 평등권 보장 의무 규정
- 차별 철폐와 평등 촉진을 위한 노력
- 관련 선언 및 권고에 대한 수용 요구
-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
-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법령 및 제도 마련
- 가사분담과 출산 등 전통적 성역할 변화를 이행하도록 노력
- 기타 선언과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행과 합의를 확인

2.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

□ 관련 법령

○ 성평등³⁾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여성 평등 원칙을 다루는 법령

한국 사회는 여성 혹은 평등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각종 법령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에 이르는 시책을 규정한 법령이 다수 존재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스포츠기본법 등에서도 일부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

3) 양성평등은 두 가지 성에 국한하는 용어이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장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체육현장의 성평등 정책은 여성, 소녀, 논 바이너리, LGBTQI+ 등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 이어야 함.

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제4차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비엔나에서 유엔 주최로 개최된 세계 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제71조에 따라 각국은 인권NAP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인권NAP의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권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인권위는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인권 NAP의 구성

6개 대주제, 27개 중주제, 100개의 과제로 구성

[제4차 인권 NAP 대주제]

- I.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 II.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 III.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 IV.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 V.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 VI.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 제3차 권고 주요 내용 및 정부 이행 평가

인권위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 개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성인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하고, 성별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등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인권NAP에 포함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된 통계 등의 제도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화가 미흡하였고, 여성 폭력 대응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각지대의 취약 여성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 제4차 권고의 배경(성평등을 위한 지속적 제도 보완)

남녀소득 격차를 공공기관에서부터라도 해소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또는 가정 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 필요

헌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 보장 필요

○ 여성 및 평등 관련 핵심과제

- 재난,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 제도개선
-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성소수자
-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방지
-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 이외에도 재생산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

Ⅲ. 스포츠와 성평등

1. 국제적 기준

□ 올림픽 현장

○ 성평등 기조 유지

(올림픽 현장 소개, 참고 부분)“올림픽현장에서 실제 인물 지칭 시 사용된 남성 형 표현(예를 들면 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지도자, 임원, 선수단장, 참가자, 대회참가자, 선수, 심판, 레프리, 심사위원, 연락관, 후보자 또는 직원의 명칭 또는 he, they, them과 같은 대명사)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여성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평등권의 원칙과 보장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4)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6)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 7)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과 조직에서 스포츠에 있어 여성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16조 위원 1.3) “신임 위원은 선서식에서 아래의 선서를 통해 의무 이행을 수락함으로써 IOC의 위원이 된다. “IOC 위원이 되는 영예를 수여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의무를 명심하면서 <중략>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고,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IOC와 올림픽 운동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2.5)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대우와 폭력행위에 저항하는 조치를 취한다.”

□ 올림픽 종목 선정

○ 올림픽 ‘종목 및 세부종목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 for sports and disciplines)’

이 기준은 8개 분야 39개의 기준, 74개 항목 구성

평가결과는 비공개 보고서 형식을 통해 IOC 집행위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이는 이후에 치러지는 표결에 반영

- (평가기준의 평등권 증진) 39개 중 14개의 항목이 직, 간접적 관련
집행위원회 내의 여성의 수와 남성의 수(또는 동급) 비교
- 최근 두 번의 올림픽 경기에서 예선 경기에 남자 vs. 여자가 참가한 국가연맹의 비교
- 여성스포츠위원회 내에 경기단체 종목이나 특정 여성종목에 대한 모든 계획의 존재
- 각 부분별 남녀 세계선수권대회와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개최원년
- 각 부분별 남녀 세계선수권대회와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개최횟수
- 개최될 올림픽대회 2년 이전에 남녀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연맹의 수
- 지난 두 번의 남녀대륙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연맹의 수
- 지난 두 번의 주니어 남녀 대륙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연맹의 수
- 지난 두 번의 남녀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연맹의 수
- 지난 두 번의 올림픽에 남녀가 예선에 참가한 국가연맹의 수
- 지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남녀가 획득한 메달의 대륙대비 NOC의 수
- 지난 두 번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가 획득한 메달의 대륙대비 국가의 수
- 지난 두 번의 남녀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료관중을 위한 티켓의 수
- 지난 두 번의 남녀세계선수권대회에서 관중에게 판매된 티켓의 수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제31조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

○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성별, 인종, 출생, 성 정체성, 언어, 종교, 문화, 정치·사회적 견해, 국가나 사회적 출신, 장애, 경제·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아동의 성격이나 재능, 신체 및 정신 발달 측면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학습, 놀이, 스포츠, 여가 및 오락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

2. 국내의 조치들

□ 현황

○ 여성 스포츠 참여의 확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일반화되고, 여성 스포츠인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한 등록선수 130,344명 중 여성은 29,999명(23.0%)이며, 전문체육 지도자 20,817명 중 여성은 3,760명(18.1%)임

○ 여성 스포츠 인권의 범위 문제

최근의 체육계 인권상황 관련 논의는 주로 여성 선수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온 측면이 있음

여성 스포츠인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확장된 시야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여성 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스포츠에서의 인권 문제

○ 일반 인식(침해 및 차별)

- 인권침해 취약성과 원인
-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
- 스포츠 참여로 인한 성취경험과 보람, 목표의식 등

○ 선수활동 전반에서의 경험

- 인권침해 경험
- 사적 관계 요구
- 공동생활 중 문제
-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 지도자들의 재생산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 행정 및 지도자 배려 부족
- 부담함, 불이익 우려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 임신, 육아, 경력단절
- 모성보호

○ 지도자들의 진로 및 취업

- 은퇴 후 성별에 따른 진로 차별
- 채용 및 처우 불이익
- 운동지속 어려움, 선발제외, 은퇴종용, 진로 제약 등

□ 2019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

○ (실태조사 결과) 여성전문체육인 대상

- 전문체육인 837명(여성 641명, 남성178명) 조사 결과, 경기 참여 기회, 장비·시설 등 지원 등에서 여성선수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특히 보수, 고용형태, 계약기간에서 남녀선수·지도자의 차별이 존재

- 여성지도자의 49%가 성희롱·성폭력 경험
- 초등학생을 제외한 여성선수 응답자의 65%가 생리통이 있어도 훈련(경기)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음.

- 「헌법」 제32조제4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법」 제8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치의견) 여성 전문체육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 체육계는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수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정책권고) 여성 전문체육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성평등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마련 및 시행(교육부)
- 여성지도자 취업 지원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문체부)
- 성평등한 단체 운영 지향, 여성 임원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문체부)
- 스포츠 분야 고용차별에 대한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여가부, 고용부)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시, 성평등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 관리방안 마련(대한(장애인)체육회)

○ (정책권고) 여성 전문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해소

- 단체 관계자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별도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안을 마련, 참여형·소통형 인권교육 실시(문체부)

- 법령에 따른 성희롱 근절 및 모성보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문체부)

-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 및 피해방지 및 보상 등을 위한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문체부)

- 체육단체 임원들의 지도자에 대한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및 선수, 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대한(장애인)체육회)

□ 정부부처 및 단체의 성평등 대응 방안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근절대책

(여성지도자 할당제)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 목적, 우선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할당제 등 특화된 양성체계를 마련

※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발표한 2008년 이전 10년간(1998~2007년) 여성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20%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헌장_제4조)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예방_가이드라인_5.1.)스포츠계의 성적 불평등 구조와 남성 중심적 문화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 지도자를 적극 양성하고 지원한다.

(성폭력예방_가이드라인_5.2.)스포츠 종목별 특성상 선수의 성별이 주로 여성이거나 여성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성 지도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성폭력예방_가이드라인_5.3.) 여성 지도자의 채용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성폭력 예방과 훈련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한 여성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여성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해줌으로써 스포츠 공동체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방지대책

(예방 교육)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직장운동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평등 증진 및 고용촉진) 평등권, 재산권,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수립, 여성 선수 경력단절 지원, 선수-가정 양립 보호체계 구축, 지도자 성비율 관리 필요
- 2019년 대한체육회 10대 혁신과제
(전국체전 개선)2020년부터 대한체육회_사업계획 양성평등 기조 확대
(여성 참여 제도적 보장) 여성임원.간부 비율 및 지도자 배치 확대
- 2020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체육인 성인지교육 의무 및 정례화(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인 등 확대)
- 2020년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추진기본계획
(여학생 신체활동 부족 지적) 한국은 체육교과 시간이 저조, WHO의 신체활동 수준 발표('19.11월)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최하위권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종목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신체능력을 반영하는 종목 선정 및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 2021년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추진기본계획
(2020 사업성과 분석) 전체 중고의 86.0%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21년 전체 예정)하고, 여학생 특화 학교스포츠클럽 2종목 이상 운영 권장 및 예산 지원 /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2021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추진목표로 4대 중점과제인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을 제시함. 그러나 하위 22개 실행과제 모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OECD 최하위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책인 여학생 관련은 1-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그침
(1-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내용)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 예정되었으나 본질적인 교육 평등에는 미치지 못함. 예>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특정 요일 여학생 우선 사용, 탈의실 확보=활성화? 등

[1-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내용]

□ 운영 개요

- (기본방향)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 및 스스로 참여하는 태도 증진
 -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종목 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시도교육청) 여학생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여학생 참여 종목 5종목 이상 운영
 - 여학생 스포츠캠프, 여학생 체육활동 주간 등 여학생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학교) 학교급별 신체발달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예시) 신체발달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계획

-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종목 선정 및 수업 활용
- ❖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여학생의 감성을 자극하여 참여가 쉬운 종목을 수업에 활용
 - * 넷볼, 킨볼, 치어리딩, 요가, 댄스, 방송댄스, 줄넘기, 자전거, 롤러, 배드민턴 등
- ❖ 중·고등학교 혼성학급에서는 학생들이 희망을 반영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수업을 운영하거나, 혼성으로 운영 가능한 종목 활용
 - 여학교는 5종목 이상, 남녀공학은 2종목 이상 여학생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및 교내 대회(리그)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 등
 - * 매주 특정 요일(예: 수요일)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여학생 우선 사용

□ 운영지원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계획 및 학교 계획 수립
 - ※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중고등학교 탈의실 100% 설치 지원
 - * 시도교육청 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 반영 추진('20년~)
 - ※ '19년 65% → '20년 86%(252억원) → '21년 100%(43억원) (<붙임11> 참조)

□ 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중략>

-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진흥의 모법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관련 내용 없음

○ 스포츠 기본법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략>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

-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진흥법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 제2조의2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IV. 한국 사회에서 타이틀 나인은 필요한가?

1. 타이틀 나인이 말하려는 것

“어떠한 교육활동이나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활동들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될 수 없으며, 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Title-IX」

다시금 곱씹어 보지만 우리에게 정말 타이틀 나인이 필요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법령과 제도들 속에서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미 타이틀 나인이 말하고자 하는 교육평등 법령과 시책들은 마련되어 있거나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는 중이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Title-IX은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파생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천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형 타이틀 나인을 갈망해 왔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이 미래인양 오해한 결과다. 단언컨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법령과 국제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는 각종 규정들, 그리고 정부와 체육단체들의 시책들은 더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도 충분히 성평등 기조에 대한 당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도 입법과 행정, 그리고 학계에서 새로운 정책인 양 소개되는 것들은 거의 모두 ‘돌려막기’의 산물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법령과 정책들이 그러하듯 그 강제성을 담보하는 제재에 대한 방편이 부족하고,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의 설립, 그리고 정부 부처와 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들이 미진한 상황에서 정책들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IOC도 올림픽 정식종목 선정 평가에 성평등 지표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NOC가 이를 간과하는 관행을 보인다가, 한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스포츠 영역에서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해치는 경우들은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경우, 인권은 보편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체육계의 사정, 즉 특수성은 ‘모든 사람’을 지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논의에서는 별개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행이라고 부르며, 권리를 주장한다.

물론 관행은 전통적으로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ethos라고 부르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영역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관행은 주로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스포츠 세계의 개별특수성이 인권논의의 보편성과 상충될 때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소위 당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이 보편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IOC의 올림픽 헌장과 국제적인 법령들 모두 한국 스포츠계가 주장하는 그 특수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의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거들만 수도룩하다. 따라서 추후의 체육 현장에서 성평등 정책은 당위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성을 주장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로 실천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주장들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같은 진단은 스포츠계 인권정책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에 대한 것이라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Title-IX은 한국의 교육평등에 대해 입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들이 구성하고 있는 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하자는 결심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인식과 문화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자체가 '여성스럽지 못함'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한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최근 여성의 스포츠 참여 관련하여 도쿄올림픽 참가선수가 남녀비율이 51:49로 거의 1:1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세부종목의 메달 수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남녀 혼성 경기의 확대 등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별로 인한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평생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에서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율 제고와 권리 당사자들의 권리 장전을 위한 노력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스포츠가 남성중심적 문화로 발전되어 성평등화가 더디고, 성평등에서 성중립적-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선택지 중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가까운 성주류화가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주무부처의 폐지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더구나 감수성 증진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역량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체육

분야에서 성평등 교육 현황 관련 자료가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대부분이 '성폭력방지' 교육으로 국한되어 있어 문제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으로 확대 문제는 이에 대한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스포츠 관련 각 기관들이 성평등 증진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효과적이겠으나, 그 기회를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직원, 공무원처럼 인권교육(현행 폭력, 성폭력 방지 교육 말고!)으로 통합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 통합의 내용이 폭력 등의 방지 교육과 성평등 증진 교육을 침해와 차별의 문제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현장에서 성폭력 방지교육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현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차별 철폐의 당위성을 말하는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법령과 스포츠 원칙들이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주는 것이다. 합의가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제 약속을 잘 지킬 공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V. 나가며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들이 차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인권의 기본 방향은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이 질문을 체육계의 '특수성'으로 수렴하여 다루는 것과, 그것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인권적으로 도출해내야 할 성평등을 위한 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의 과제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련의 방침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국 교육평등법 Title-IX도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성차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연 2>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소프트볼

동아대학교 강사
김 지 영

I.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의 현황 및 문제점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은 평소 소속팀에서 훈련하며, 연간 2회 2주간 정해진 기간에만 소집되어 단체훈련을 한다. 2022 하계훈련장소는 부산시 기장에 위치한 정규 소프트볼 구장이었고, 숙소는 울산에 위치한 호텔이었으며 식사는 훈련 일정에 따라 숙소 식당과 경기장에 마련되는 출장뷔페로 해결되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의 지도자는 선수 개인의 능력개발과 팀 전력상승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선수들과 소통하며 길지 않은 훈련기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 하계훈련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실시되었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되기에 충분한 환경에 만족하며 열심히 훈련한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이며, 어린 시절부터 소프트볼 선수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선수들이다. 선수 상담을 통해 얼마나 소프트볼을 애정하고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의 선수들은 상담에서 “대학팀이나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요.”, “소프트볼이 인지도가 낮아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만, 가능성이 작아요.”, “소프트볼이 홍보되는 방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어요.”, “소프트볼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야구 관련으로 진로를 정하고 야구지도사 자격증에 응시했어요.”, “어릴 때부터 소프트볼만 해왔고 계속하고 싶은데 실업팀이 4개 밖에 없어서 선수 생활을 못 하게 된다면 음식점을 창업하고 싶어요.” 등을 언급하며 한결같이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마도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될 만큼의 기량을 갖추었다면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볼의 경우에는 실업팀이 4개뿐이기 때문에 실업팀에 입단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프트볼 팀이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만,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이어온 소프트볼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선수까지 활약했던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경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을 선수들이 인지하고 소프트볼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 선수들의 현실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처럼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된 것에 자부심을 품고 더욱 노력해서 국가대표선수가 되는 등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소프트볼 선수의 활동기간은 다른 종목보다 비교적 짧으며 선수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선수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가대표 후보팀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져 소프트볼계의 현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소프트볼 선수와 팀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회를 개최할 때는 전용구장이 적어서 운동장에 펜스를 설치한 임시 경기장이나 야구장을 빌려서 경기를 진행한다. 미비한 시설뿐만 아니라 장비 또한 부족하여 시합용과 훈련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김동아, 임수원, 이혁기, 2012). 따라서 소프트볼 현황개선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Ⅱ. 학교체육과 소프트볼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체육 활동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체육활동을 관전하거나 수다하는 심각한 수준이다(남상우, 이창섭, 2006). 학교체육은 어린 시기에 움직임을 경험하며 스포츠 인식이 형성되는 시작점으로써 제공되는 체육의 내용과 실천되는 정도에 따라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유익함을 체득하여 정신단련과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에 여성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어 여성 스포츠 활성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여학생이 학교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체력이 약해서”, “체육복 갈아입기가 불편해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등의 답변(교육인적자원부, 2007)에 따라 여학생의 학교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육수업 시수를 늘렸지만,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여학생이 학교체육에 참여가 저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체육활동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도출됨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은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였고,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이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종목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3). 더불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프라 확보와 함께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를 존중하여 학교체육 수업에 킥볼이나 플로어 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남녀합반으로 운영될 때도 체육수업을 분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3). 지금까지 주장되고 있는 여학생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이 도입에 관련된 의견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며 이에 추가로 여학생의 스포츠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으로 여성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여성 지도자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여성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에 도입되어야 할 스포츠 종목은 소프트볼이라 여겨진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후보팀의 지도자는 “소프트볼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쉽게 즐기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스포츠로써 소프트볼 전용 돔구장 등의 시설을 잘 갖추고 지역대회와 전국대회가 개최되며 발전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프트볼의 유익함이 널리 알려져 선수들의 삶의 터전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라고 소프트볼을 소개한다. 소프트볼은 여학생 체육활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스포츠 종목이라 판단된다. 소프트볼은 여성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이며, 유소년스포츠로도 적합하여 학교체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 축구나 농구는 남학생의 운동이라고 인식되어 학교체육과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김택천, 2016), 소프트볼은 여성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포츠로써 여학생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야구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쉽게 경기 운영이 가능하여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에 소프트볼과 여성 지도자가 도입되는 제도적 변화는 소프트볼 선수들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 인재들이 스포츠를 떠나지 않고 스포츠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Ⅲ. 나가기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볼 종목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지만, 소프트볼이 학교체육에 도입되는 계기를 통해 현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실제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선행연구들은 소프트볼 선수에게 집중된 연구가 대부분이며(김단경, 김지태, 김영준, 2014; 김지은, 최만식, 황승현, 2005; 전광숙, 이청무, 2001) 소프트볼을 다양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연구(이가람, 우승호, 2018)가 진행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먼저 소프트볼이 학교체육에 도입되기 위해 소프트볼이 학교체육으로써 적합한 이유와 유익함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학교체육에 활용될 수 있는 수업 지도안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프트볼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소프트볼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소프트볼을 통해 여성 스포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기스포츠가 되어 대중의 많은 관심 속에서 소프트볼 선수들이 활약할 기회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방안. 내부자료.
- 김단경, 김지태, 김영준(2014). 소프트볼 선수의 지도자 신뢰, 자기관리, 심리기술, 인지된 경기력의 인과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3), 17-33.
- 김동아, 임수원, 이혁기(2012). 비인기 종목 초등학교 엘리트스포츠 학생선수 수급 문제와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2), 27-36.
- 김지은, 최만식, 황승현(2005). 소프트볼 선수와 일반학생간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7(3), 123-131.
- 김택천(2016). 여자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99-110.
- 남상우, 이창섭(2006). 학교에서의 신체활동과 젠더의 재생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441-458.
- 이가람, 우승호(2018). YMCA를 통한 소프트볼의 대중화 과정. 한국사학회지, 23(3), 85-99.
- 장순웅, 김지태, 김영준(2013). 소프트볼 선수들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 발달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2(1), 325-337.
- 전광숙, 이청무(2001). 여고 소프트볼 선수의 수비 위치에 따른 체격 및 체력 비교.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5(2), 215-224.
- 최아라, 배명훈, 김영식(2021). 소프트볼 선수들의 은퇴, 직업전환, 회귀 경험 및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1), 17-39.

<강연 3>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 학교체육 현장의 사례

전남 순천금당중학교 교사
김 세 환

I. 서 론

학교체육은 교육기관 내에서 이뤄지며 초, 중, 고 학교급에 따라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으로 점차 다양해지면서 동시에 복잡해 지고있다. 정규교육과정 내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 리그전, 각종 학교체육 행사 및 대회, 특별활동까지 포괄한다.

학교체육의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체육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과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이라는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범위 확대에 발맞춰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체육의 범위와 확대되면서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학생을 위해 체육수업의 활동 과제의 난이도와 형태가 변화되었고, 남녀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포츠가 많이 보급되고 보편화 되었다. 또한, 여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종목 다양화, 스포츠클럽리그 확대, 재정적 지원확충 등의 교육 정책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체육의 활동 범위 확대와 여학생의 학교체육 활성화가 학교체육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학교체육 참여에 대한 기피, 참여율 저조 현상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체육

을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과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일지도 모른다. 현장에서는 학교체육의 활동 범위가 확대 및 다각화하면서 동시에 연계 및 융합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인재 육성 체계 변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1]. 교육부 역시 학교체육을 단순히 교육과정 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지원 등으로 다각도에 접근하는 이유도 학교체육에서 다양성, 복잡성, 연계성 등의 속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에서의 여성과 관련된 인식개선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다만, 어디서부터 쟁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 앞서 말한 여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종목 다양화, 스포츠클럽리그 확대, 재정적 지원확충 등 학교체육의 양적 변화가 과연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II. 학교체육 내실화에 따른 여성 지위 및 역할의 변화

체육교육은 운동 소양(신체적·심리적·인지적·정서적 차원)을 개발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본래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생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교육2030 워킹그룹 회의, 17.5.16 OECD). 현장에서 여학생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정서적 안정 등이 향상되었다. 특히, 과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탁월성과 체력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고 여학생의 체육 소외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축구는 전통적으로 남학생이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학교현장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경기한다. 여학생이 주장을 맡아 팀 과제를 수행하고 팀 전술을 구상하고 팀원들을 통솔하여 경기 목표까지 달성했다. 축구에 국한되어 나타나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스포츠 및 체육활동이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향유하고 있다. 운동장을 차지한 남학생과 벤치에 앉아있는 여학생의 모습은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 따라 건강관리·신체수련·경기수행·신체표현으로 체육과 역량 중심의 체육수업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종목에 국한된 체육수업은 성별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역량(또는 가치)은 성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종목 중심의 체육수업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체육으로 전환하면서 여학생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고,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확대를 통해 학교 체육수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사전 학습 경험, 발달 특성, 시설 및 용기구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계획 및 운영하게 되면서 개개인을 고려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3].

또한,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기존과 달리 여학생의 학교체육 활동을 장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확대되는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도 현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교육부에서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을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체육수업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체육수업 내의 여학생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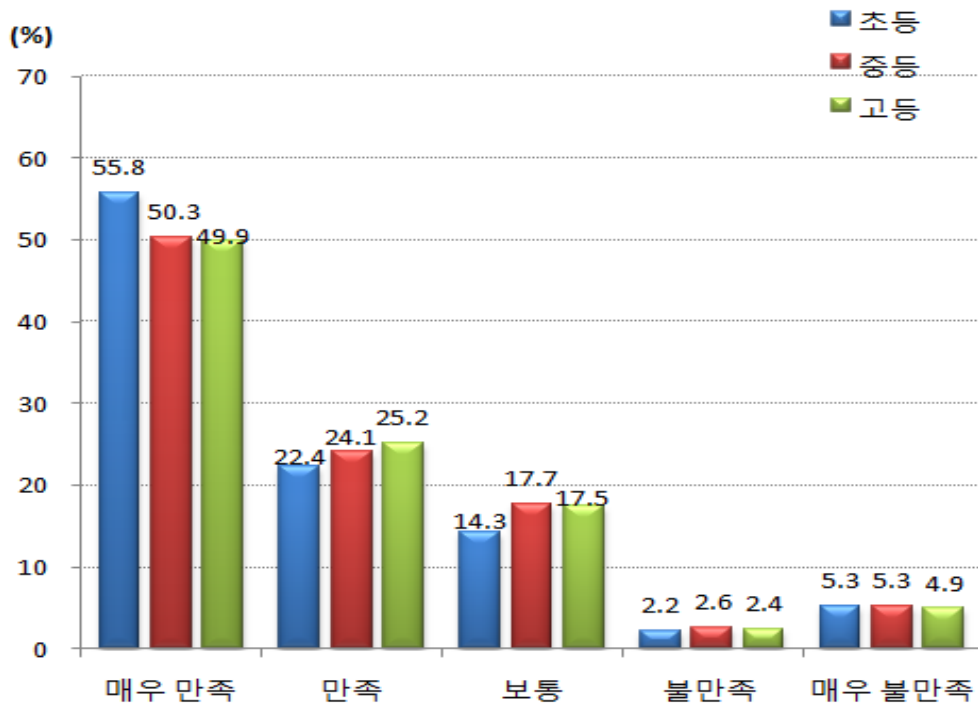
하지만 학교체육 내실화를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저조하거나, 지역 및 학교별 여학생 참여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수업 변화보다 체육수업을 위한 여학생의 체육활동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제한을 받을 경우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수업설계 과정에서 선택한 종목에 대한 사전경험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다면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모두의 체육활동을 과제 유형, 개인 수준, 사전 경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체육수업을 전개할 경우 체육활동에 따른 남녀 참여율의 편차가 적다. 반면에 과제 유형이나 개인 수준, 사전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체육활동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체육수업에서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위와 역할이 부여하고 남녀 모두를 위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편과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교육 정책적 지원으로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인식개선이 이뤄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Ⅲ.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에 따른 여성 지위 및 역할의 변화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여학생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등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1. 학교급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출처]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 추진 성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및 여학생 리그 활성화, 여학생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율 제고 등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교육부에서 발간한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리그 운영 길잡이에서는 여학생의 참가 기회 제공과 활동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었다[4]. 현장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을 조사하고 희망하는 종목 중심 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만족도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구기종목 등(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14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학교스포츠클럽 선호도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반영한 클럽 개설 및 운영, 리그전 및 대회 출전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클럽 운영 형태를 남녀 혼성팀과 남녀 분리팀 모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또, 여학생 특화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내 체육실 및 탈의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200개 학교에 탈의실과 실내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환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5].

여학생 체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여학생 체육활동 참가가 저조하다. 특히, 강당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과 탈의실 공간 확보는 성과가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실태파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규 교과 내 체육수업과 달리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학생 선호도에 따라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여학생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운영을 위한 시설 이용에 대해 남학생의 반발이 강하다.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로 인해 오히려 남학생 집단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여학생 선호도 조사, 여학생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에 따른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와 인식개선은 체육교사, 방과 후 강사 등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여학생의 체육활동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담당하는 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해본 경험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 계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학생 축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역량을 계발하는 대신에 남학생 축구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택하거나 여학생 전담교사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학교현장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요구로 인한 변화와 정책 시행으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는 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이 다른 요구에 흔들림 없이 스스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화·발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 현장에서 시작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목소리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로 정책적인 변화와 풍부한 지원은 학교 현장에서 여성체육의 발전 및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 아직 이르다.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양성평등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추진 성과가 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하고 양성평등적 인식을 함양한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재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역량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IV. 체육인재 육성 체계 변화에 따른 여성 지위 및 역할의 변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인재 육성체계의 변화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의 수업일수 제한,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e-school 운영 내실화, 최저학력제 운영, 체육중점 학교 활성화 등이 있다.

체육인재 육성체계가 변화할 때 흐름 속에 있는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와 인식개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지도방식에 대한 변화 등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학생선수라는 범위 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남자’ 학생선수, ‘여자’ 학생선수로 구분 짓거나 여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인재 육성의 목적은 여학생의 지위 및 역할 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학생선수 육성과제 내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이라는 이슈가 크게 작용하였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체계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파생되는 각종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현재의 체육 인재 육성 체계의 변화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만큼이나 양성평등적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변화 요구도 크다.

최근 체육계에 있었던 미투(Me Too)운동은 남녀 분리 훈련, 여성전담 코치 배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주었다[8]. 미투운동의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발굴하는데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학생선수 발굴에는 개인 기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성별을 고려한 선수 발굴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또, 남성과 여성 지도자의 성비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기도 한다. 여학생의 인권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젠더 균형에 맞춘 여성 지도자의 채용이 필요하지만 어렵다[9]. 운동기량이 뛰어난 여학생은 여성 지도자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9].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은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가치관 형성과 성역할에 따른 행동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10]. 하지만, 학교의 학생선수 육성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

할의 변화,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학생선수의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 발굴 및 지도 과정에서 성의 이분화가 계속 이뤄지는 모습이 보인다.

성의 이분화는 종목 간 차이를 변별해 주고 스포츠에서의 남성성에 특권을 부여해주는 상징적 위계질서로 작용된다. 즉 스포츠에서 성에 대한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피드나 힘 등의 근력을 요하는 스포츠 종목의 경우 경쟁, 승리, 강인함, 공격성 등의 남성적 특질들과 맞물려 남성성을 대변하는 팔루스(phallus)적 기표를 생산해 낸다. 반면 스포츠에서의 여성 운동선수의 몸은 경기력에 앞서 성적인 욕망과 연결시켜 헤어 스타일이나 화장, 의상, 몸매, 외모 등 편향된 시선을 통해 강제적인 섹슈얼리티와 모성적 몸을 강요해왔다[11].

남성적인 스포츠에서는 여성 학생선수 발굴에 한계를 보인다. 성별은 운동선수 발굴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성의 이분화가 고착화된 운동부에서 개인기량이 뛰어나더라도 성별이 다르다면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인식의 장벽을 느끼고 운동을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학교체육 내 체육 인재 육성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여성 학생선수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V.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을 위한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학교체육을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엘리트 체육로 구분하여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 그에 따른 양성평등적 인식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보았고, 양성평등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교사 역량 강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여학생 체육활동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활성화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역 및 학교별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지위 및 변화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면서 동시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방법은 결국 ‘교사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 학교체육 진흥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의 발전 및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양성평등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허나, 현장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을 고려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 계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속적인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사에게도 여학생의 역할 변화와 인식개선이라는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2.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사는 교육과정 실천가로서 교사 자신의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를 교육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재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 보면 교육과정은 전달하려는 지식 또는 그 단위로서

의 교과들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인격의 함양 또는 바람직한 능력·특성들의 형성으로 보면 교육과정도 그러한 인격 또는 능력·특성 형성에 최적한 학생들의 경험을 지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제적 의미를 지닌다[7].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다. 결국,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는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교육과정은 법에 근거한다. 교사의 수업은 결국 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교육과정 내에는 많은 교육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학교체육 진흥법에 관련된 내용을 재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 역시 중요하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법적 근거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교육과정 문서 속에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준다면 교사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의 실천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원양성제도 재편성

사범교육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사범대학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는 곳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육 실천가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르친다. 교원양성과정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토대를 두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양성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교원양성 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감축)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을 현직교사 대상의 재교육 기관으로 바꾸고 교원양성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교과 교사는 종전처럼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설교사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배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12].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전문성 확장과 지속적 발전하는 교원양성,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예비교원·대학 등 현장 수용성과 관련하여 교원양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미래 소양 함양을 위한 원격교육, 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4]. 교원양성 체제 변화는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비친다. 미래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사범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원양성 과정을 거쳐 교사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 현장 속에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치기 이전에 사범교육에서 전문적으로 양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미래교육 만큼이나 양성평등 교육도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교사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사범교육에서 사전에 배우듯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도 교원양성제도에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원을 배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학교체육에서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다. 모두에게 속도를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캠페인은 벌이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스쿨 존(school zone)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주통학로 내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교원양성제도 내에 여성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인식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범대학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 배치될 때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양성평등의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한 교원양성 과정 강화가 요구된다.

VI. 결론 및 제언

학교체육 내 체육 인재 육성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과 관련된 쟁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다.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첫째, 체육수업 내실화에서는 여학생이 체육수업에서 남학생과 동등한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성별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성, 사전 학습 경험, 발달 특성, 시설 및 용기구 등을 변화하여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선택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성별만 고려한 체육수업은 여전히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추거나, 오히려 여학생의 참여 활동을 더 크게 제약하기도 한다.

둘째,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여학생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선호도를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여학생 체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식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지도교사의 역량 부재는 오히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역할을 고정하고 반복하는 게 아닌지 염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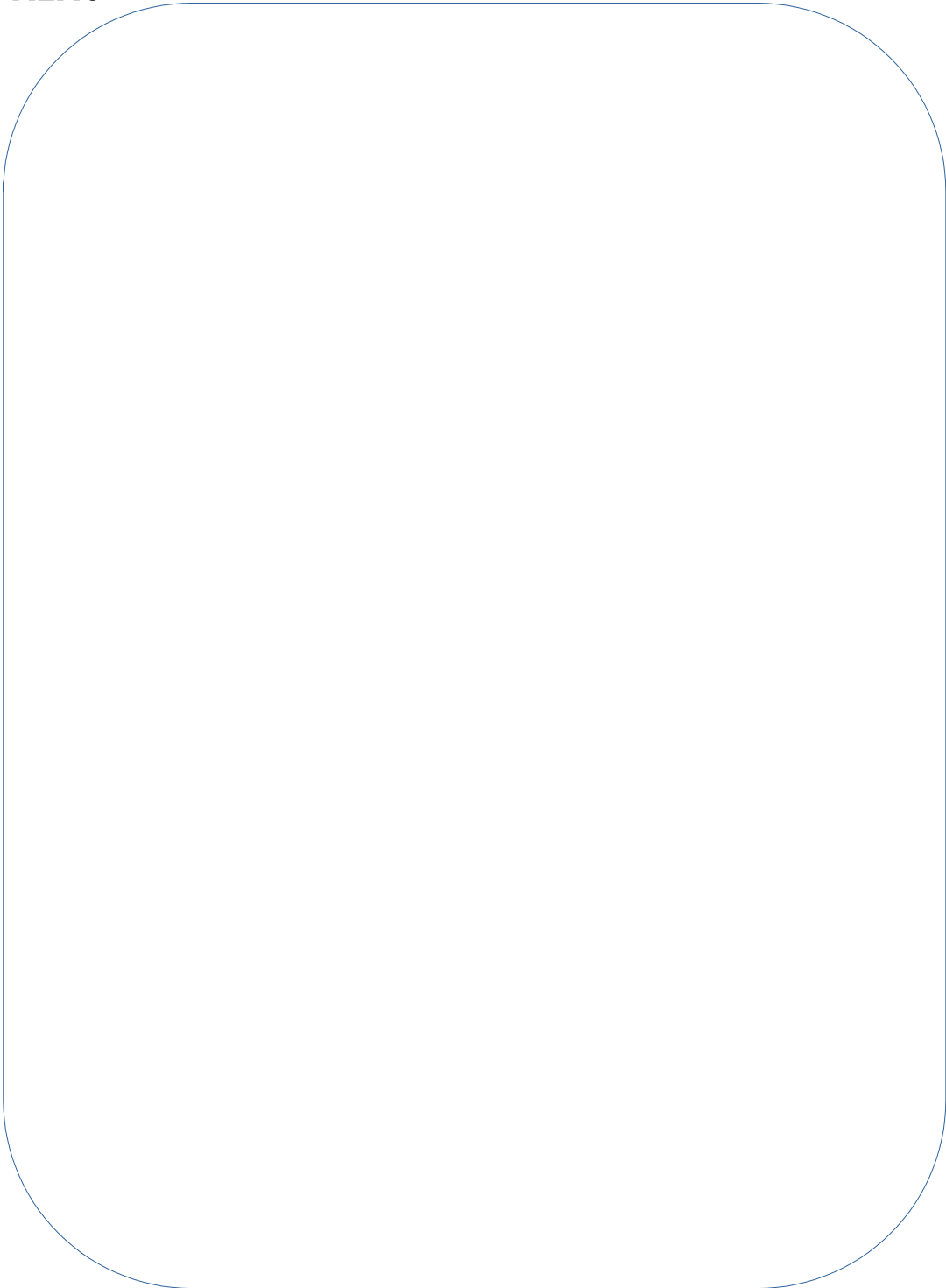
셋째, 체육인재 육성체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고입 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체계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확실히 드러나는 반면에, 양성평등적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와 인식개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력이 아닌 성별을 고려한 학생선수 발굴, 지도자 젠더 불균형, 성의 이분화 등은 학교체육 내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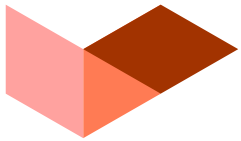
학교현장에서의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양한 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의문이지만 학교체육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실천가로서 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시해보았다. 교사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양성제도 재편성 등 교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찌면 양성평등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성평등에 관련된 모든 과정 속에 교사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2] 제 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 교육부. 2018. 12.
- [3], [12]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2018-16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4]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길잡이.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교육부. 2014.
- [5], [6] 진연경·이현석(20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정책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
- [7]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2018-16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8] 임재연(2022. 01. 04.). 학교폭력 미투(Me Too)논란에 대한 단상.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1115>)
- [9] 김겨례(2020. 10. 05.) 한국체대, 여학생 성비 높아도 男교수·男조교 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984662592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10] 박선향(2019). 남녀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과 복지.
- [11] 김정은·신현군(2016). 여성 운동선수의 섹스화된 몸과 젠더화 된 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 [12] 신하영(2021. 12. 10.). 교육대학원, 교사배출 대폭 축소 교원양성 방안 확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9206629277208>)
- [13], [14]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교육부. 2021. 12.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ue border, intended for taking notes during the forum.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전라)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